

#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6
----------	-----

발의년월일 : 1994. 12.

발 의 자 : 충청북도지사

## □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내무부 개정준칙시달

## □ 주요골자

- 의료원장 임면 : 이사회추천에 의해 도지사 임면 ⇒ 임명의 경우에만 이사회추천  
(면직의 경우에는 이사회 추천 불요)
- 의료원장 신분과 관련된 이사회소집 : 기획관리실장이 소집 ⇒ 예산담당관 또는  
보건과장이 소집

## □ 근거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1항, 제2항 및 제79조의 3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 □ 칙 부

1.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3. 관련법규 발췌 1부.

#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임명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추천에 의한다.

제16조 제3항 단서중 "(기획관리실장)"을 "(예산담당관 또는 보건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